

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

회 차 : 제 373회 예비심사

안건번호 : 제 2013-211호

안 건 명 :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

위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 · 의결 하였음.

붙 임 :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규제심사 결과

2013. 06. 20.

규 제 개 혁 위 원 회 위 원



<붙임>

「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
에 관한 고시 개정안」 규제심사 결과

규제 내용	심사 결과
<p>1. 표본검사(신설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표본검사 세부 시행 기준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본검사 대상 선정은 상·하반기로 하고, 실시결과를 다음연도 1월까지 보고하도록 규정 - 표본검사 비율 및 비율 산정방법 규정(표본은 인증시험 제품의 3%로 하며, 1건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수점 이하 절사) - 회로나 구조 변경·보완 기자재, 국민의 인체안전 보호, 공중통신망 영향, 원장이 요구하는 기자재 등으로 표본검사 대상기자재 선정기준 규정 - 지정시험기관 확인사항 및 표본검사 시험적용 기준 규정(회로 및 구조변경 확인, 시험당시 기준 적용) - 회로·구조 변경이나 부적합시 즉시 보고 의무 근거 마련 - 지정시험기관 구매 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표본검사 시료 확보 방법 마련 	< 비중요 규제 >